

정정 신고 (보고)

2026년 7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퇴직연금아세안4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 4. 8
3. 정정 사유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VaR 변동, 재무정보 확정)
 -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추 가)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삭 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VaR는 7.87%입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VaR는 8.49%입니다.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추 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추 가)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추 가)	가. 수익자총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추가)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추가)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추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 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협조를 다한다.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추 가)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